

漁船檢査業務 改善方案提案

檢査理査 崔 洛 卿

1. 머리말

어선협회가 발족한지 어언 2개 성상이 지났다. 이동안 어민의 재산과 인명의 피해예방을 위한 어선의 검사업무를 집행하면서 조그마한 일로부터 많은 개선을 거듭하여 왔다.

좀더 어민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도록 하고 보다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많은 연구와 검토끝에 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계속하여 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것이다

어선검사의 목적이 어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의 예방에 있다고 하면 어선으로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설비되어 있으며 어민이 이배를 타고 어업에 종사하면서 편리하게 어업생산 활동과 쾌적한 선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태풍과 안개등 자연환경으로 부터 안전하게 조선(操船)할 수 있도록 어선설비를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도록 확인 점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맞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즉 소형어선은 소형어선으로서 해야하는 어업의 종류에 알맞은 설비를 정하고 그 설비의 규모와 설비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형어선은 대형어선으로서 해야하는 어업의 종류에 알맞은 설비를 정하여 어업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알맞은 설비기준을 정한 다음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검이 검사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검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어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사업무의 개선인 것이다.

이러한 검사업무의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 하여야 할 사항, 현재 개선된 점을 소개하므로써 검사를 하는 검사원이나 검사를 수검하는 어민, 조선관계자에게 알려드리고 지속적으로 개선의 의견을 제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조언을 바라는 바입니다.

2.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현행 어선설비등에 관한 규정은 선체구조, 기관, 설비, 복원성, 만재홀수선등 관계규정을 통합, 1,083조의 방대한 조수(條數)로 되어 있다.

이중 강선구조규정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형어선으로서 적용하기에 알맞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소형어선에 적용하기에 부합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수산청과 합동으로 이의 개선작업을 착수한 바 있다.

이의 개선작업의 방향은 첫째 불합리한 관계 규정은 과감히 개선 또는 폐지한다.

둘째 중복, 오기(誤記), 어렵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를 명료하게 바로 잡는다.

셋째 소형어선은 소형어선에 알맞는 설비, 소형어선이나 원해조업을 하므로써 해난사고가 예상되는 어선에는 이에 알맞는 설비를 하도록 하며 대형어선일지라도 연해조업일 경우에는 설비를 과감히 줄일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제법이 요구하는 설비는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섯째 현재 이 규정이 농수산부령으로 되어 있는바 기본요건의 설비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부령으로 규정하고 시험, 공작, 예비검사에 해당하거나 점진적으로 개발되므로써 탄력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검사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청장의 고시 또는 어선협회의 내규로서 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에 기술한바와 같이 검토되어 농수산부령으로 공포될 것은 공포하고 수산청장의 고시 또는 어선협회의 내규로서 규정할 것을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인바 이 규정의 제정에 있어서 어민, 조선평계자, 선박기자재의 제작에 관련되는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수산청(어선과) 또는 본회(지부, 출장소 포함)에 전화, 서신 또는 구두로 제시하여 주신다면 많은 참고가 되겠다.

본회 주관으로 본규정의 개정작업과 관련 어민, 조선평계자, 행정업무관계자등과 3차에 걸쳐 협의하도록 1차에 80.11.28 주문진에서, 2차로 80.12.5에 군산, 3차로 80.12.8 부산에서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예정이며 이간담회에서도 좋은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믿지마는 의견제시가 되지 못한 분은 언제라도 좋으니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다면 기꺼히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니 기탄없는 참여가 있도록 기대하는 바입니다.

3. 검사업무집행의 개선

3-1. 본부업무의 기획, 관리화

본회발족이래 12개 지부, 출장소를 관장하면서 도면승인등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1980.11.15을 기하여 전량 지부, 출장소에 업무를 이관하였다.

그간 적량측정등 업무에 있어서는 각 지부에 분산, 개개인의 처리방법, 능력의 차이로 확실적인 적량측정업무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도면승인업무와 같이 규정의 적용의 혼선, 기술인력의 미확보 체제정립의 미흡 등 창설초창기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본부에서 이러한 민원업무를 관장한바 있으나 이제 2년여의 경력과 지부, 출장소의 기능정비, 수검어민의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의 민원업무는 전량 지부, 출장소에 이관하게 된 것이다.

그간 1차, 2차단계로 부산과 인천, 여수지부에 도면승인, 적량측정등 일부업무를 이관조치를 취한바 있었고 금회에는 제 3 단계로 전량 이

관하게 한 것이다.

그간 본부가 민원업무를 관장하므로써 본부의 기본 기능인 기획,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된 인원으로써 다소 무리한 여건이었으나 초창기의 업무를 확일적으로 바로 잡아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이제는 본부가 당초의 기본기능인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어선의 실비규정을 비롯한 각종 어선 검사관계 법령의 정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

둘째로는 각지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향상을 비롯한 제도, 지침, 요령등을 제정 지도하며 셋째로는 각 지부업무를 위한 인력, 장비의 지원

넷째는 각종 검사집행실적의 종합, 분석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등 방안을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다섯째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며 철저한 검사집행을 위한 방안의 수립과 어민여론의 청취, 홍보방안등을 연구,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지부업무의 정예화(精銳化)

어선의 검사는 일선지부 출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검사원이 집행하고 있다. 일선검사원은 어선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민과 밀착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검사원의 자질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첫째 기술적으로 어민이나 조선평계자, 선박용기자재제작에 관계되는 모든 수검대상자보다 기술적인 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둘째로는 보다 친절하고 자상하며 신속한 행동으로 보다 빨리 융통성있게, 또한 설득력있게 철저한 검사가 될수 있도록 유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떠한 권위의식이나 이해가 가지않는 언행 집행방법으로 수검자에게 어떠한 의아심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권위를 확보하고 정신적으로 유도하며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자질을 향상하여 모름지기 기

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승양을 받는 검사원으로 자질을 향상하는 것이 본회의 발전과 검사업무 개선의 요체가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따라서 일선검사원은 이러한 자질향상과 기술능력배양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어선검사자로서 또한 어민기술지도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검사원이 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자질의 검사원에 의하여 지부업무가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정예화하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다.

3-3. 검사분소(分所)의 확대설치

어선의 검사는 현재 부산, 인천, 대천, 군산, 여수, 주문진, 포항, 마산, 제주등 9개 지부와 목포, 충무, 삼천포등 3개 출장소 계 12개 지부출장소에서 집행하고 있다.

검사를 집행하는 지부, 또는 출장소를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어민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어선협회의 예산과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행정의 이용자는 국민의 편의 위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서 검사소의 확대설치는 예산과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어민으로 하여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선협회는 현예산과 인력범위내에서 총 9개소의 분소설치계획을 마련하여 1차적으로 주문진지부관할 속초, 동해시, 부산지부관할 울산, 마산지부관할, 장승포등 4개지역에 검사분소를 80.12.1자로 설치하였다.

1980년 3월에는 장항, 안흥, 완도, 울릉, 서귀포등 5개소에 같은 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분소는 관할 지부의 지휘 감독하에 검사원 1명과 행정보조 1명등 2명으로 우선 가능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주재하는 검사원이 할 수 없는 검사업무는 관할 지부의 지원을 받아 업무수행이 되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는대로 업무량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출장소등으로 격상시키므로서 보다 원활한 검사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4. 검사업무절차등의 간소화

검사업무절차는 그간 순회출장검사 30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단독검사집행등 간소화 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임시검사와 같은 간단하게 확인 점검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검사원의 판정에 따라 현지 서명 날인으로서 검사가 종결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임시검사 뿐만아니라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판정하여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송이 되도록 하므로서 현장 검사후에 지부 또는 출장소에 돌아와 지부장 또는 출장소장의 결재를 얻어 각종 증서 또는 검사결과를 받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개선하므로서 보다 편리한 검사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종 신청, 구비서류와 증서의 통폐합 및 간소화를 해야 할 것이다. 신청업무를 가능한한 통폐합하므로서 신청의 중복을 피하고 불필요하거나 서류로서 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도 신청을 받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떠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3-5. 검사업무의 과학화(科學化)

복잡한 관리업무는 계속하여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어선도 7만척이 넘어서고 2만척이 넘는 어선의 기록과 검사기록을 전산처리를 한다면 각종 통계에서 부터 각 어선별 현황 파악이 지극히 용이할 뿐아니라 적량측정, 복원성 계산등 기술업무수행에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 될 것이다.

또한 전산기 자체도 소형으로 개발되어 많은 설치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된바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산업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용 공구도 보다 과학적이고 치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수급하여 명실공히 검사의 과학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좀더 투자가 획기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이지

하는 검사업무를 보다 과학화로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적격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을 설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소형선박기구 산하에 5개소의 검사장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검사장의 수를 확대하여 가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검사장 시설을 하므로써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검사업무 수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6. 검사수수료의 개선

영세어민과 검사집행지외의 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1980.9.15자로 어선검사수수료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첫째 검사집행지외에서 어선검사를 할 때에는 3,000원의 추가징수금을 받고 검사원이 어선검사지까지 출장하는 출장비를 어선검사수수료외에 별도로 징수하던 것을 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집행지내에서 검사를 받거나 집행지외에서 받는 경우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한 것인데 이는 집행지외의 어선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지 내에서 보다도 신청등을 위하여 시간과 불편을 더하고 있으면서 수수료까지 부담이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었던 것을 금회에 개선하게 된 것이다.

또한 1톤에서 부터 소형어선은 영세한 점을 감안 파격적으로 검사수수료를 인하조치하고 대형화 할수록 그 인상폭을 크게 조정하여 소형영세어민의 부담경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 검사수수료의 수준은 일반물가 또는 다른 검사수수료에 비하여 너무도 차이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1톤급 어선의 정기검사수수료가 1,300원으로서 이는 실제 검사원이 검사하는 실경비인 인건비, 출장비, 기타업무비용을 감안한다면 현실성이 결여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될 것이다.

앞으로 어민의 부담능력, 물가상승, 검사업무 발전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검사업무를 개선과 발전에 보다 도움이 되는 것이 어민과 협회가 공존하면서 커나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언

위와같이 검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산청을 비롯하여 어선협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 보안, 개선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사업무를 집행하는 주체만이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검사를 받게되는 어민과 조선소에서도 같이 협조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업무는 설비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약하지 않다면 합격하게 되는 것인바 그 기준이 정한 이상의 설비를 갖추게 된다면 검사업무는 사실상 확인업무에 끝나게 되는 것이다.

어선설비규정이 정한 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함과 동시에 이 시설을 절차에 맞게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는 어선설비규정이 정한바를 빠짐없이 또 규정에 알맞도록 건조하도록 선주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겠으며 어민은 필요한 설비,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설비에 대하여는 법을 지키고 생명을 중시하고 해난사고를 당하지 않는 어선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꼭 설비를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다.

상가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겠다든가, 구명설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항의 시급성만을 강조하여 무리한 검사요구를 하는 풍토는 이제 이땅에서 없어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새롭고 正義로운 사회를 건설코자 하는 국정의 지표는 이러한 조그만 일에서부터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곧 보다 여유있고 福祉로운 어촌건설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으며 앞으로 어선검사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민, 조선소 그리고 관련된 업계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건의 전달을 주시도록 바라는 바입니다.